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개선 재 안내

1.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산정특례운영부-1268(2021.6.22.) “암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개선 안내”
3. 위 호와 관련, ‘등록기준 예외 적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다시 안내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귀 기관 소속회원들에게 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전 | 수정 후 |
|--|--|
| <p><등록기준 예외 적용></p> <p>⑤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특례 기간 종료 시점(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 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 <p><등록기준 예외 적용></p> <p>⑤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특례 기간 종료 시점(종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 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

붙임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개선 안내 1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주임

서명심

팀장

주요심

부장

전결 6/24

조순자

협조자

시행 산정특례운영부-1303 (2021.6.24.) 접수

()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1층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s.or.kr>

전화 033-736-4644

전송 033-749-9616 / s_ms@nhis.or.kr

/ 공개